

의안번호	2209737
의 퇴 인	최은석의원
회 답 일	2025.4.11.
추계번호	25E216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에 대한 비과세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의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91조의18 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에 대한 과세특례)	○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에 따라 8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이 아동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 시 가입자가 19세가 되는 날까지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○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가입자의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○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중도 해지 시 과세특례 금액을 추정함 ○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19세가 되는 날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봄

- 주: 1. 본 개정안은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에 따른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(신설)을 전제로 함
 2.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정부가 아동이 성인(19세 미만)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의 금액을 계좌에 지급하고, 금융기관 등이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형식으로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운용하는 제도를 말함. 해당 계좌에 보호자도 매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할 수 있고, 아동이 19세가 되는 날부터 인출할 수 있음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1조의18 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본 개정안에 따라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되지만, 이에 따른 세수변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해당 계좌에서 발생할 이자소득 등에 대한 자료 필요

-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도입 시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 - 현행 개인의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%의 세율(원천징수세율)을 적용하고,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 등)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(누진세율)을 적용하여 과세
- 개정안에 따른 세수변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해당 계좌에서 발생할 이자소득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며, 이자소득 등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적립금액을 포함한 적립금액 총액 및 계좌 운용 수익률 등에 대한 자료 필요
 - 정부 지급금은 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나, 보호자 적립금(월 20만원 이하)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 보호자 적립금액을 포함한 적립금액 총액을 추정할 수 없음

□ 그러나 향후 해당 계좌 운용으로부터 발생할 이자소득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자료에 의한 객관적인 추계 곤란

- 참고로 8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 적립금 지급 시 향후 5년간 26.8조원(연평균 5.4조원)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, 정부 지급금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고채 금리 전망(2025.3.)을 적용할 경우 향후 5년간 약 989억원(연평균 198억원)의 이자소득세 감소 예상

[표 1]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및 세수 감소액 추정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지급 대상자 수 (천명, A)	4,797	4,634	4,478	4,309	4,089	
정부 지급액(만원, B)	10	10	10	10	10	
지급 개월 수(개월, C)	12	12	12	12	12	
총 지급액 (조원, $D=A \times B \times C$)	5.8	5.6	5.4	5.2	4.9	26.8
이자율(% , E) ¹⁾	2.8	2.7	2.6	2.5	2.5	
이자소득세 (억원, $F=D \times E \times 14\%$)	224	213	199	183	170	989

주: 1. 통계청 2023년 「장래인구추계」(중위시나리오)의 8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, 향후 해당 연령의 실제 아동 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 2. 이자율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고채 금리 전망(2025.3.) 활용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지원	박연서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지원	02-6788-4662	jwpark1209@assembly.go.kr